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
----------	-----

제 출 일 : 2026. 4. 7.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7조제4항, 제5항)
  -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개정 등

##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5. 10. 17. ~ 2025. 10. 27.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6. 1. 22. ~ 2026. 2. 11.(20일)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한”이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공원조성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공원조성과장 김 준 모
	팀장 직위·성명	공원녹지팀장 장 호 진
	담당자 성명·전화	서 인 석 (031-590-8368)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비용부담)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u>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7조(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⑤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한”이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u></p>

##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 2. 미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침부 사유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부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으로 신규 세출·세입 발생 없음.

- 최근 3년간 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

구분	부과건 / 금액	체납건 / 체납액	비고
2024	22건 / 275,915천원	없음	
2023	34건 / 126,642천원	없음	
2022	33건 / 153,977천원	없음	

### 4. 작성자

환경국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91)

1. 공원조성과-8401(2025.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91) 1부. 끝.

남 양 주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휘 복지국장  
첨일 2025. 10. 23.  
일련로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36638 (2025. 10. 23.)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공공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mailto:yhlee0127@korea.kr) / 이공계(5)

- 정약용의 상상술 채우는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91		
정책명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공원조성과	
	담당자명	서인석	전화번호 031-590-836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0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원조성과)	○ 상위법령(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제7조(비용부담) 조항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공원조성과장 귀하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88)

공원조성과-8369(2025.10.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문관

주무관	김주현	청원관리팀장	이정주	감사관	2025. 10. 21. 윤경석
합조자					
시행	감사관-12101	(2025. 10. 21.)	결수	공원조성과-8482	(2025. 10. 2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a href="mailto:sh99006@korea.kr">sh99006@korea.kr</a>	/ 비공개(5)

- 정각홍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88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공원조성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녹지9급 서인석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10. 21.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5년 10월 21일</p> <p><b>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b></p> <p>(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b>공원조성과장 귀하</b>			

##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남양주시 공원조성과장-8359(2025. 10. 17.)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비용 징수 기간을 명문화하는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항목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 30일 이내(「지방세징수법」 제14조)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양 파 칙 영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김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10. 20.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2850	(2025. 10. 20.)		집수 공원조성과장-8408	(2025. 10. 20.)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8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pj12850@korea.kr	/ 비공개(5)

- 정약봉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공원조성과-606(2026.01.21.)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조 례 명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6. 1. 22. (목) ~ 2025. 2. 11. (수) / 20일간
-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 라. 예고결과 : 의견없음

붙임 입법예고문(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주우관	<b>서언여</b>	공원녹지팀장	<b>장요진</b>	공원조성과장	<b>김문모</b>	환경국장	<b>남명화</b>	전광 2026. 2. 13.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공원조성과-1273			접수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공원조성과 (다산동)				/ <a href="https://www.nyj.go.kr/">https://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8368	팩스번호	0315908639	/ <a href="mailto:seo11@korea.kr">seo11@korea.kr</a>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